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이해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상법의 특별법 / 주식회사 지배구조를 기초로 (법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

- 적용범위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예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일정 규모 이하의 금융회사는 일부 적용제외 (법 3조 3항)

1. 임원

금융회사 임원의 종류
(1) 임원

- 이사
- 감사
-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
- 업무집행책임자

종류, 자격(결결사유), 선임방법,
직무권한, 의무, 책임은
법령에 규정

(1) 임원

(1) 임원

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

결격사유

- 지배구조법 §5①

제5조(임명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임상년자·재정년수·인도 또는 헌법상후증인
2. 평신성교 및 고등관(법률학과)이나한 시험
3. 경고 이성의 성적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음고 이성의 성적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고지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징계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임직원 대로여 직장 또는 이직 또는 이직으로 헌법상으로 인정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만일 이전까지 아니한 사람
7.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경업의 허가·인가·통지 등의 허수
8. 「금융소외인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탁금지 조치
9. 「금융소외인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외인에 대한 특별한 금융관련법령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제17조에 정한 바에 따라 1~20) 만일 이전까지 아니한 사람
10. 해당 금융회사의 규칙성 및 건전성 조건과 신용질서를 하지 못하거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개념

- 상법(§382③):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제17조에 따라 선임(임원추천위원회->선임)

• 지배구조법(§2 4) :

-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제17조에 따라 선임(임원추천위원회->선임)

• 사외이사 비율

- 이사 총수의 과반수

• 적용예외

- 법 3조 3항 1호 / 시행령 6조 3항 / 시행령 12조
- (상장금융회사 또는 증권모금융회사); 이사총수의 1/4
- 예: 보험회사 - 자산 3천억원이상~5조원미만

(3) 사외이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 결격사유: 지배구조법 §6①
 - 대주주(초대주주, 주요주주)와 해당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격사유를 정함
- 적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6③
 - 금융,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외이사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별 18조)

-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3) 업무집행책임자

업무집행책임자 (별 2조 5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정·부행장·부행장·부·전무·상무·이사 등 (예시적 열거)
 -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 * 상법의 업무집행자(시자 중 표현이사와 비교)

(3) 업무집행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8조)

- 주요업무
 -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 위와 같은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
 - 임면 : 이사회의 의결
 - 임기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함
 - 위임관계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이사회

(1) 이사회

금융회사 이사회의 구성 (법 12조)

이사회의 구성은 법정됨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이사회는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것은 반드시 이사회가 결정해야 함

• 3명 이상의 사외이사

-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매년)
- 사외이사를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

(1) 이사회

이사회의 상법상 권한

- 업무집행정정권 (상법 §393①)
 -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주주총회 소집권 / 대표이사 선정 / 공동대표의 결정 / 신주발행 / 준비금의 사용금전임 / 자기거래의 승인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 / 사채발행 /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감독권 (상법 §393②)
 -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1) 이사회

이사회의 지배구조법상 권한 (법 15조 1항)

- 경영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권한 관련 규정

-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 「상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음

(2)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내 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별 16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
 - 보수위원회
 - 내부통제위원회
- 구성
-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
 -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2) 이사회내 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
-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
-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8조

(2) 이사회 내 위원회

보수위원회

3. 감사위원회

- 권한 사항
 -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 보수체계
 -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 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이연하여 지급
 -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

-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대체하는 기관
(감사위원회=감사)
- 감사위원회 선임방법은 법정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확보가 중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 원칙: 설치

4. 내부통제시스템과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 요소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위반시 조사, 등을 위한 독립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3 이상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
- 선임,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추천
- 감사위원회 되는 이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제한
- 감사위원회 되는 사외이사 1명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

(1)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 요소

- 2000년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에 도입

• 내부통제시스템

- 내부통제기준 + 절차

(2)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역할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
-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조사
- 감사위원회(감사)에 보고

정원 및 임면절차

- 1인 이상
- 이사회 의결의

- 원칙: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1)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의 목적

- 법령준수
- 건전한 경영
- 주주 및 이해관계자(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 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이사회
 -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최종적 책임
- 최고경영진
 - 구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

(2) 준법감시인

법적 지위

- 경영진을 보좌하는 역할
- 임직원에 대한 감시역할 담당
 - >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의 독립성 확보
 - 자료, 정보 제출요구
 - 인사상 불이익 금지
-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COSO

-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 was organized in 1985 to sponsor the National Commission 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an independent private-sector initiative that studied the causal factors that can lead to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It also developed recommendations for public companies and their independent auditors, for the SEC and other regulators, and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National Commission was sponsored jointly by five major professional associations headquartered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AA),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 Financial Executives International (FEI),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 now known as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IMA). Wholly independent of each of the sponsoring organizations, the Commission included representatives from industry, public accounting, investment firms, and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first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ssion was James C. Treadway, Jr.,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General Counsel, Prudential Inc. and a former Commissioner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Hence, the popular name "Treadway Commission." Currently, the COSO Chairman is Lucia Wirdi.

(1) 내부통제제도란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COSO

- 기업의 전사적(全社的) 위험관리시스템인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안에서 불가분적으로 작동하는 통제기법

- 내부통제를 통하여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상법상 내부통제

상법상 회사의 내부통제

판례 : 이사의 감시의무로서의 내부통제

-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의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능력과 내부통제제도 강화

• 외부통제(규제감독)의 내부화 / 자율화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일반 회사 내부통제제도와 비교

- 법령을 준수하고,
-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조례 시행령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로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종합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금융협약을 맺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노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련하는 방법 및 절차 등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충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임직원 경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금융회사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3)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달하는 조작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조(내부통제기준 등)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금지와 부과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건에 발지하기 위하여 영업후기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영업후기 기간,

적용 대상, 협력 및 협조 기관에 대한 책임과 부과되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3. 사고방생 무관가·높은 단기거래에 대해 특수의 원칙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세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지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는 제6조제5항), 개정 2021. 3. 23.,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현안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별 자금세탁방지(이하 “자금세탁방지”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제2조제

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는 업자는 제외한다)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별 현안사항·실시 주기, 영업후기 기간,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현안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나. 자금세탁방지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

성·효과성을 검토·증명하여 위험도에 따라 권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부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사항이나 이율화기·정도록 하기 위한 영업점의 신설사원 학인 및 교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증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증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회보 방안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8. 그 밖에 제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마련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2022. 7. 22. 선고 2021누60238 판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원들의 관리의무 위반)을 구분함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와 “실효성”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입법화 한 것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됨

자체구조법 개정

금융회사 자체구조법 개정안 투여다보니

‘내부통제 총괄 관리 실패’ 대표이사 해임요구까지 가능

정책·집행·지원·점검·보고 등 전반 실효성 있는 관리조직 책임부여
장기간 반복적·조작적 사고 발생 등 대규모 금융사고 중장기 전망’

은행7의 잇따른 내부통제 실패로 대표이사 대행으로 전임 대행, 감독, 감사, 경영 주의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관리 청탁·증명·내부통제 기준·법칙· 또는 관리의무·위반한 경우 자체구조법 25조(전원에 대학 재체조차) 등에 저도개인·방향·별표한 이유 3 등, 원내협의회의 충돌성이 높은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로 해임요구가 가능해진다. 이런 내부통제 강화·압박이 ‘금융판 금융회사 대표이사’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구조법에 따라 고려하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관계자는 “금융판단력은 내부통제 위반으로 해임되는 경우는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지배구조법 개정법 요약

01 책임소재 불분명 → 책임구조도

- ✓ 각 경영진별로 책임영역 사전배분
- ✓ 중복 또는 누락 없이 책무를 배분한 책임구조도

02 내부통제 기준마련의무 설정 → 내부통제 일련의 과정 전체를 규율

- ✓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조치” 의무 신설
 - ✓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신설
- 03 이사회의 역할 미흡 →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역할 강화
- ✓ 이사회의 최종 책임 명시(심의 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포함)
 - ✓ 이사회의 역할 미흡으로 책임회피나 조작화 또는 팽徨위축에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통제 등이 효과적 성장을 위해 대내외 협력으로 강화하는 조치도 대표이사의 권리의 부에 포함된다.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충분히 책임의 청탁을 의뢰한 후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책무구조도

01

Finalised gui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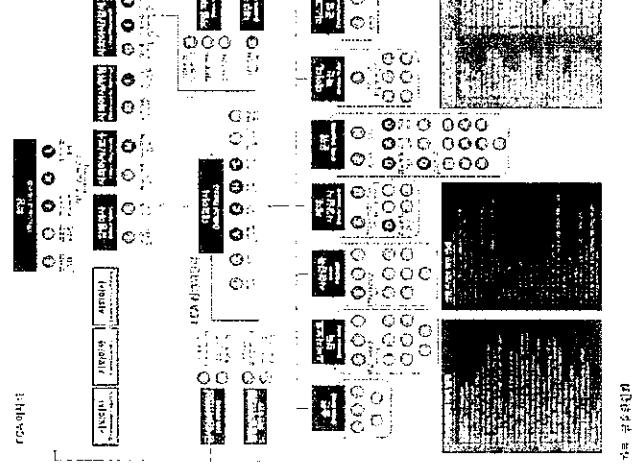
FG19/2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Guidance on statements of
responsi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Maps for FCA firms

March 2019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영국 금융당국(FCA)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참고자료 3] 영국 금융당국(FCA)의 제한 책무의 종류

Prescribed Responsibilities (제한책무)	Overall Responsibilities (제한책무)
A. 회사 경영방법에 대한 책임	1. 재정적 부문
B. 회사 경영방법에 대한 책임	2. 정신적 부문
C. 고용주로 하여금 직원을 해임, 고용,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3. 학문적 부문
D. 종업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4. 윤리적 책임
E. 법령으로 정해진 책임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5. 윤리적 책임
F. 이사회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6. 기업윤리
G. 재무상태(재무상태)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7. 기업 재무상태 관리
H. 유익한 회사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8. 재민 구현 및 헌법 존중
I.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9. 고액영업 거래
J.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0. 시장조작 방지
K.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1.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L.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2.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M.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3.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N.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4.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O.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5. 기업윤리 관리 및 헌법 존중
P.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6. 기업윤리 관리 및 헌법 존중
Q.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7.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R.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8.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S.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19.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T.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20.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U.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21.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V.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22.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W.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23.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X.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24.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Y.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25.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Z.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26.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 회사 운영에 따른 책임, 특히 고용 계약 체결 및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27. 책임감 있는 운영 및 헌법 존중

책무구조도(Responsibility Map): 개념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지배구조법상 임원

- 이사
- 감사
-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
- 업무집행책임자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

- (시행령안) 이사(호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
- 이사(호)의장: 정보접근성 및 업무시간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개별 이사에게 부여되는 상법상 감시의무의 범위로 책임영역을 한정할 예정(금융위 발표)

책무구조도: 적용대상

다른 회사 임원

- 해당 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
- 자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
→ 자회사 책무구조도에 반영

- 글로벌 본사에서 외국금융회사에 실질적 영향력
→ 외국금융사 책무구조도에 반영

책무구조도: 적용대상

임원이 아닌 직원 (시행령안)

-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경우)
- 위험관리책임자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경우)

책무구조도: 책무의 내용

책무란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 업무영역 (시행령안)

- ① 특정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 ② 영업관련 부문별 업무
- ③ 경영관리 관련 업무

1. 법령 등에 따라 특별 책임자를 설정하여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제25조의3 제2항 제1호 관리)	가. 이사회 운영 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책무구조도 마련·관리 등) 다. 내부감사 라. 위험관리 마. 출범감사 바. 자금세탁방지 사. 내부회계관리 아. 정보보안 자. 개인·신용·고객정보 보호 차. 금융소비자보호
--	---

2.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록 받아 수행하는 고유·점영·부수업무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제25조의3 제2항 제2호, 관리)	가. 예금 나. 수신 다. 내국화 외국화 라. 투자매매 마. 투자증개 바. 집합투자 사. 투자자문 이. 투자일임 자. 신탁 차. 보험상품개발 카. 보험계약 타. 보험계약체결 파. 보험계약인수 하. 보험계약관리	기. 보험금지급 너. 보험대리점 업무 더. 신용카드업 러. 제보험 녀. 할부금융 버. 신기술사업금융 서. 전자금융업 어. 혁신금융서비스 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처. 연금(예인연금, 퇴직연금)	기. 전략기획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 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제25조의3 제2항 제3호, 관리)	가. 인사·교육 다. 보수 라. 자산운용 마. 진전성 관리 바. 재무관리 사. 공시 아. 업무위수탁 자. 광고 차. 자회사 관리 카. 영업점 관리 타. 영업점 외 판매채널 관리

2.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록 받아 수행하는 고유·점영·부수업무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제25조의3 제2항 제2호, 관리)	가. 예금 나. 수신 다. 내국화 외국화 라. 투자매매 마. 투자증개 바. 집합투자 사. 투자자문 이. 투자일임 자. 신탁 차. 보험상품개발 카. 보험계약 타. 보험계약체결 파. 보험계약인수 하. 보험계약관리
---	---

책무구조도: 배분

특정 직책을 가진 임원의 책임내용(책무)을 지정

-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책무를
 - 빈틈없이
 - 중복없이
 - 특정 임원에 편중되지 않게

→ 한 명의 임원이 다수의 직책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회사내 모든 주요 책무를 적용 대상 임원에 대해
“중복없이, 빈틈없이, 편중되지 않게” 배분 필요

책무구조도: 책무

책무 위임 불가

- 경영진이 실제 업무수행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된 업무에 대한 통제 관리 책임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
-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는 원칙적으로 위임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위임하더라도 위임받은 임직원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함
 - 위임받은 임직원의 고의 과실은 위임자인 임원의 고의 과실

← 권한은 위임 가능하나, 책임은 위임하지 못한다는 원칙

책무구조도: 직책별 임원의 자격

책무구조도: 작성의무

책무수행의 적극적 요건 신설

대표이사

-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
- 현행 소극적 결격요건 외에 책무수행의 적극적 요건도 신설
-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

자격충족여부 확인의무

- 금융회사는 임원의 신규 선임시 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시에도
-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의무

책무구조도: 제출의무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

책무구조도 최초 작성 및 주요사항 변경시

- (예) 인사로 직책 담당 임원이 변경되거나, 영업업무 변화로 책무가 신설·폐지되는 경우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그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는
것이 아님

- 다만, 감독당국은 필요시 시정요구 가능

관리의무

02

내부통제 관리의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마련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무

-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의미

관리조치

- 소관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임원이 소속직원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의미
- ⁽ⁱ⁾기준 마련의 적정성 점검, ⁽ⁱⁱ⁾운영의 효과성 점검, ⁽ⁱⁱⁱ⁾기준 준수 여부 점검, ^(iv)미흡사항 파악·대응·개선, ^(v)효과적 작동(사후관리조치, 교육, 조사 및 징계), ^(vi)주요사항 대표이사에 보고 등

→ 내부통제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 ·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능성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 대표이사는 각 금융회사별 사업특성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
-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framework) 구축과 전반적인 임원 통제활동의 적정성 점검 등에 대해 책임
- 모든 세세한 개별 통제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님

-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에 대해 책임

← “알 수 없었다”는 변명이 아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명

관리의무 신설의 의의

- 내부통제 기준 마련뿐 아니라 운영·준수 등 일련의 과정(process) 전체를 규율대상에 포함
- 경영진은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및 효과성 점검, 미흡사항 개선 등 단계별로 관리조치 실행
- 충분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하급자에 의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경영진의 제재수준 감정·면제 가능

← “알 수 없었다”는 변명이 아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명

이사회 감독의무

03

이사회의 구성은 법정됨

이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이사는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것은 반드시 이사회가 결정해야 함

제15조(이사회의 권리)

행 험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개 정 법

- ④ ① 사호는 제30조
으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15조(이사회의 권리)

현 행

- ④ ① 사호는 제30조
으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내부통제위원회 비교]

구분	현 행	개 정 안
위원장	대표이사	사회이사
구성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윤리관리책임자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	위원회 과반수는 사회이사
법적근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감독규정 제11조제7항	지배구조법 안 제16조 및 제22조의 2
권한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변영 등 개선방안 검토,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심의·의결)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수립,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등
기타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의무(감독규정)	이사회내 위원회에 적용되는 사항 (의사록 작성 등) 적용

제재 및 면제

04

위반에 대한 제재

신분제재

-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침실행하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하여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 부과

-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임원)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업무집행책임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요구

위반에 대한 제재

고유의 자기책임

-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닌,
-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

→ 내부통제 업무의 위임은 가능하나 관리의무와 책임은 해당 임원에게 있음

면책기준

상당한 주의 (과실책임 ≠ 결과책임/무과실책임)

-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책임 경감 또는 면제
- "상당한 주의"는 사전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업계에서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련 - 제도시행前·後로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속적으로 업무영역별 "Best Practice"를 질적(集積)할 예정
- 하위구정에서 상당한 주의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을 명시할 예정

[내부통제 책임규명 절차로의 이행 여부 결정 시 고려요인(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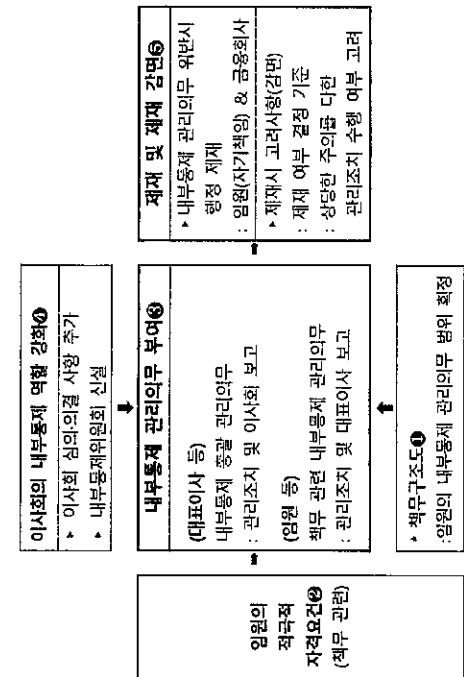
(위법의 양태) 해당 임원의 위법행위 방지·조장·자시 여부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수준) 과거 유사사건의 발생 여부,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대한 일부 경고, 민원 언론 등의 집중적·번복적 문제제기 등
(위법행위 결과의 중대성) 피해규모, 기坦인원의 규모, 위반의 지속기간, 반복성 등
(위법행위의 평급효과) 금융시장 페미터 정도, 시장질서의 해손수준, 위반행위의 결과로 인한 금융회사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신뢰 회손정도 등

자료: 금융위원회

투명성 일관성 확보

- 당국이 관리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임원에 책임을 묻는 상황을 미리 정하여 공개(금융위 고시)할 예정
- 사고발생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까지 다를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절차로의 이행(移行) trigger" 기준 설정
 - 임원의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내부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

[개정법의 제계]



Q & A

